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| 과태료(단위: 만원)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    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
|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| 법 제18조제1항 제1호 | 75          | 85    | 100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|
| 나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·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·제출한 경우 | 법 제18조제1항 제2호 | 50 | 70 | 100 |
| 다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| 법 제18조제1항 제3호 | 50 | 70 | 100 |